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70호

「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6년 1월 30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정(안) **행정예고**

1. 제정이유

대외무역법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‘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차보전 지원대상(안 제3조)

나. 이차보전 한도, 기간 및 사업공고 등(안 제4조~8조)

다. 실수요자 결정 및 실수요자 의무(안 제9조~제16조)

라. 금융기관 대출 및 이차보전액 지급·정산 절차 등(안 제17조~제21조)

마.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(안 제22조)

바.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등(안 제23조~제24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앞

- 전화 : 044-203-4696

- 팩스 : 044-203-4717

- 이메일 : jihwon@korea.kr